

## 이주민을 위한 지역사회통역에 대한 연구\*

강 지 혜  
(아주대)

### 1. 서론

마이클 크로닌은 『번역과 세계화』(Translation and Globalization)에서 오늘날 세계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시공간의 압축, 초국가적 이주 현상의 증가, 언어 문화 간 접촉의 확대 등으로 번역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번역은 본질주의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기보다는 관계 중심적(relational)인 관점에서 접근되어야”(Cronin 2003 111)한다고 주장한다. 번역자의 작업이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번역 과정에 대한 번역자의 태도는 끊임없이 변하는 정치·경제·문화 시스템 또는 역사와 무관한, 절대적인 것으로 정의될 수 없다”(111)는 설명이다. 이는 곧 번역에 대한 이해방식이 시공간적 맥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번역현상이 공통적인 몇 가

---

\* 이 논문은 2009년 아주대학교 우수연구그룹육성사업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임.

지 속성을 가진 행위로만 환원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크로닌의 관점은 특히 한국사회가 빠르게 다인종·다민족 사회로 변하는 오늘날 이주민을 위한 통역현상을 이해하는 데도 필요하다. 이주사회의 공식 언어를 모르는 이주민이 경찰서, 법정, 의료시설, 학교, 각종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을 이용할 때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통역’은 언어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이주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sup>1)</sup> 그런데 어느 사회에서나 지역사회통역은 언어 전환 작업이라는 차원을 넘어 타자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이주 관련 담론 및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사회 내적 언어접촉 상황(*intra-social language contact situation*)”(Pöchhacker 127)에서 구성원들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지역사회통역이지만, 이러한 통역은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정도, 정부의 재정 상태, 이주민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국가가 주도하는 정책(예, 이주민정책, 언어정책)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태도 등과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지역사회통역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학계에서는 지역사회통역에 대한 연구가 오랫동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동안 통역 연구는 주로 국제회의통역이나 동시통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cf. Cronin 2002 390), 여러 사회에서 이주민을 위한 통역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통역 연구도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지역사회통역 연구가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Hertog and van der Veer 2006, Hale 2007, Wadensjö 1992, 2008, Mason 1999, Erasmus *et al.* 1999, Corsellis 2008, Hertog 2009). 지역사회통역에 대한 논의는 주로 통역이 행해지는 상황과 공간을 기준으로 세분(예, 법정통역, 의료기관통역 등)되어 진행되는데, 다문화 사회 형성의 오랜 경험을 가진 호주, 미국, 캐나다 그리고 유럽의 여러 국가들

1) 본고에서 사용하는 ‘지역사회통역’이라는 표현은 번역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community interpreting’을 번역한 것이다. 현재 번역학에서는 ‘community interpreting’과 유사한 의미로 ‘dialogue interpreting’, ‘liaison interpreting’, ‘public service interpreting’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2008년에 발간된 『번역학백과사전』(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Routledge 출판사 출판)에서 사용된 ‘community interpreting’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다.

을 중심으로 지역사회통역이 주로 연구되고 있다. 국내 번역학계의 경우, 지역사회통역을 소개한 고영민(2004, 2005) 강지혜(2004)를 제외한다면, 본격적인 연구는 비교적 최근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김진아 2008, 김진아·정혜연·이상빈 2009, 최철 2009, 정혜연 2009, 조희철 2009, 류현주 2006). 국내 연구는 주로 법정통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법정통역의 실태, 법정통역사의 수요와 이에 대한 대책, 법정통역의 법적 의의, 법정통역사 양성과 교육, 외국 사례 등의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주민을 위한 지역사회통역의 발달과정과 국가가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지역사회통역제도의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지역사회통역 연구들은 법정통역과 같은 하위 범주를 중심으로 통역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주민을 위한 통역’이라는 공통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국가가 주도하는 이주 관련 담론 및 정책에서 통역이 제시되는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통역 유형이 혼재하는 ‘지역사회통역’ 범주를 분석한다. 이주민을 위한 통역 문제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지역사회통역에 대한 오졸린스(Ozolins)의 논의를 토대로 한국사회에서의 지역사회통역 문제를 정책담론과 제도화의 과정, 국가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 2. 이주 현상과 지역사회통역

전 지구적인 이주 현상이 통역과 번역에 미친 영향은 광범위하지만,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는 국가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통역 제도가 발달한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다문화사회로 널리 알려져 있는 호주, 미국 등에서는 이주민의 권리 보호, 언어차별(linguicism)의 해소, 소통 문제의 해결, 사회적 통합을 위해 지역사회통역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통역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의 마련, 통역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 통역 교육의 제도화와 전문화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코셀리스는 영국의 사례를 토대로 지역사회통역의 발달 과정에서 ‘정부’, ‘공공기관’, ‘통역사’가 모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다고 주장한다(Corsellis 12-13). 구체적인 통역정책과 제도가 정부에 의해 마련되고, 이러한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양질의 통역서비스가 제공되며, 통역사들이 주체적 역량을 발휘하여 전문적인 통역 교육 및 인증 시스템을 운영할 때 지역사회통역제도는 체계적으로 발달 및 운영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주현상의 증가가 반드시 지역사회통역의 법적, 제도적 준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주는 전 지구적 현상이지만 이주민 유입으로 발생한 통역 수요에 대처하는 방법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오졸린스는 국가가 이주민을 위한 통역 수요에 대처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국가들을 ‘무대응(none) 국가’, ‘임시 서비스(ad hoc services) 제공 국가’, ‘일반 언어서비스(generic language services) 제공 국가’, ‘포괄 서비스(comprehensiveness) 제공 국가’로 구분한다(Ozolins, 1998 8-11). 각 유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 무대응 국가: 이주민의 언어 문제에 대해 국가가 특별히 대응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주민이 주로 외국인노동자로 구성될 때 나타나는 대응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이주노동자의 장기 체류 금지와 엄격한 출입국 정책의 시행으로도 중단될 수 없음을 국가가 인식하게 되면 대응 방식이 변한다. 페르시아 만 연안의 국가들(사우디 아라비아,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 아랍 에미레이트 등)이 주로 해당된다.<sup>2)</sup>
- 임시 서비스 제공 국가: 통역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통역사를 찾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를 지칭한다. 통역사 교육 및 인증, 통역사 명부 관리 시스템이 개발되지 못한 단계로서, 이주사회의 공식 언어와 이주민 언어를 동시에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통역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급격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사회가 주로 해당되며,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보았다.

2) 오졸린스는 일본도 ‘무대응’ 국가로 지목하고 있으나(cf. Ozolins, 1998 10) 지난 몇 년간 일본사회에서는 지역사회통역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법정통역, 경찰서통역을 비롯한 사법통역서비스가 제도화되고 있다(조희철 187-189).

- 일반 언어서비스 제공 국가: 정부 또는 기타 기관에서 이주민을 위한 언어서비스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국가가 해당된다. 각 국가별로 제공되는 언어서비스는 차이가 있는데, 지역사회통역제도 운영 초기의 영국(예, ‘국립 공공기관통역사명부(National Register of Public Service Interpreters)’의 초기 운영 형태, 전화통역서비스(Language Line) 운영 초기 단계), 스웨덴·노르웨이(예, 지방 정부 공공기관에서 언어서비스 제공), 캐나다 (예, 지방 정부의 통역서비스 초기 제공 단계), 네덜란드(예, 전화통역서비스 운영) 등이 모두 여기 해당된다.
- 포괄 서비스 제공 국가: 일반 언어 서비스가 공식적, 전문적 성격을 띠면서 교육과 인증 등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를 뜻한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통역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도 관련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 사회적으로는 이주민을 위한 통역이 특수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 호주, 스웨덴 등이 대표적 국가이며 영국도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3)</sup>

오졸린스는 이러한 4가지 범주 이외에 ‘법리적 접근(legalistic approach) 국가’를 별도의 범주로 다루고 있다(<그림 1> 참조). ‘법리적 접근 국가’는 ‘임시 서비스 제공 국가’와 ‘일반 언어서비스 제공 국가’ 양쪽에 모두 해당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이주민의 통역에 대한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국가를 지칭한다. 이 범주에 속하는 대표적 국가는 미국으로서, 미국 법정에서는 헌법 수정조항 제5조에서 보장하는 “적정 절차(due process)”의 차원에서 통역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1978년 ‘법정통역사법(The Court Interpreters Act)’이 제정되면서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에서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인통역사(certified interpreter)나 상당한 자격을 갖춘 통역사(“otherwise qualified interpreter” 또는 “language skilled interpreter”)가 재판에서 통역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Berk-Seligson 34-42, de Jongh 23). ‘법정통역사법’의 제정으

3) 오졸린스는 국가들의 대응방식들이 여기서 제시한 단계별로 진화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로 법원행정처에서는 법정통역의 수요가 있는 언어에 대하여 법정통역사자격을 인증하고, 이러한 인증을 위한 자격요건을 결정하고 있다. 특히 법원 행정 업무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및 자문을 담당하는 국립주(州)법원센터(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에서는 주(州)법정통역사인증컨소시엄(The State Court Interpreter Certification Consortium)을 1995년 설립하여 표준화된 법정통역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인증시험을 시행하고 있다.<sup>4)</sup>



〈그림1〉 국가들의 이주민을 위한 통역 수요 대처 유형(Ozolins, 1998 9)

지역사회통역제도가 가장 발달된 국가는 ‘포괄 서비스 제공 국가’이며,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유형의 대표적인 예는 호주이다. 호주 정부는 1970년대부터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서 이민자들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국립통번역사인증기관(NAATI, National Accreditation Authority for Translators and Interpreters)의 설립, 통번역자격인증시험제도 수립, 국영전화통역서비스제도(TIS)의 운영 등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역사회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Chesher 278). 국영전화통역서비스제도를 통해서만 2천명 이상의 통역사들이 24시간 전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호주의 지역사회통역제도 발달 과정에서 특히 흥미로운 것은 통역에 대한 언어정책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1984년에 발표된 호

4) 오졸린스는 법정통역사제도가 미국에서 발달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지역사회통역의 다른 유형(예, 의료통역, 공공기관통역)에 있어서는 미국이 ‘임시 서비스 제공 국가’에 해당된다고 지적한다(Ozolins 1998 10).

주 상원교육예술상임위원회의 정책연구 보고서는, 통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언어정책들이 그 후에 나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문서이다(Ozolins 1991 14). ‘국가언어정책(National Language Policy)’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통·번역과 관련하여 11개의 권고사항을 발표하는 한편, 국가 언어정책이 네 가지 원칙, 즉 “영어 능력의 개발”, “영어 이외의 언어들에 대한 구사 능력 유지와 개발”, “영어 이외의 언어로 서비스 제공”, “외국어 습득의 기회 제공”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Australian Senate Standing Committee on Education and the Arts 1.16). 특히 “영어 이외의 언어로 서비스 제공”이 원칙으로 명시되면서 통·번역이 언어정책에서 새로운 조명을 받기 시작했고 ‘언어서비스(language services)’는 호주의 모든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개념이 되었다.

이주민을 위한 통역과 관련된 내용은 그 후 1987년 발표된 교육부 정책보고서에서도 나타난다. 조세프 로 비앙코(Joseph Lo Bianco)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국가의 언어 정책이 “호주의 언어적 자원(linguistic resources)의 보존”, “언어적 자원의 개발과 확산”, “호주의 언어 교육/언어사용 노력과 국가 경제·사회·문화 정책 간의 통합”, “고객이 이해하는 언어로 정보와 서비스 제공”이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Lo Bianco 70). 오늘날 호주 언어정책의 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이 보고서는, 통역과 관련하여 “고객이 이해하는 언어로 정보와 서비스 제공”이라는 원칙을 밝히면서 “통번역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국가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Lo Bianco 164) 한다고 강조한다. 즉 통·번역 서비스의 제공은,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호주 사회에서 정부기관들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sup>5)</sup> 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에서 사용된 “언어적 자원(linguistic resources)”이라는 표현은, 언어와 통역서비스의 문제가 초기에는 ‘필요(needs)’의 관점에서, 그 후에는 ‘권리(rights)’의 관점에서 이해되었지만 결국은 “자원”의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호주 정부는 이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였고, 그 후 정책 시행을 위한 예산 투입 등

5) 호주의 언어정책 보고서에서는 통·번역서비스의 제공을 원칙으로 제시하지만, 보고서의 논의에서 통·번역이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 것은 아니다. 통·번역보다는 언어 교육이 가장 중시되었고,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된 부분도 언어 교육이다.

여러 후행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한 바 있다.<sup>6)</sup>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이주현상의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통역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지역사회통역에 접근하는 방식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을 살펴 보았다. ‘포괄 서비스 제공 국가’인 호주의 경우 언어정책이 통·번역 서비스의 제도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와 함께 통·번역에 대한 인증, 교육, 언어서비스가 매우 효과적으로 통합되어 제공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통역사인증 제도는 전문적인 통역사 교육제도와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고, 언어서비스에 대한 정부나 사회 전반의 인식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는 점도 살펴보았다.<sup>7)</sup> 한편, 법정통역제도는 미국이 발달되어 있지만, 미국 이외에도 스웨덴, 덴마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이 사법기관을 중심으로 법정통역을 제도화한 바 있고, 전문적인 교육과 인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법정통역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 3. 한국 사회에서의 이주현상, 정책 그리고 지역사회통역의 발달: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을 중심으로

#### 3.1 한국 사회에서의 이주 현상과 언어의 문제

행정안전부의 ‘2009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내 거주 이주민은 1,106,884명이며, 이는 전체 인구의 2.4%에 해당된다고 한다.<sup>8)</sup> 이처럼 오늘

6) 오졸린스는 1987년 호주 교육부 정책보고서가 1984년 상원교육예술상임위원회의 정책 보고서에 비해 통·번역 제공에 대해서는 다소 후퇴한 입장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Ozolins 1991 15-16).

7) 오늘날 호주의 통·번역제도가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하더라도(cf. Ozolins 1991 11-23),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호주의 제도는 매우 모범적이다.

8) 국내 이주민의 수적 증가의 배경에는 초저출산·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따른 이주 노동자의 유입과 성비 불균형, 출산율 감소, 결혼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결혼이주민의 증가이라는 현상이 있다. 국내 이주노동자들은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국내 등장하기 시작하여 지난 10년간 급증하였다. 이들은 산업연수생, 전문기술인력, 연수 취업자, 해외투자기업연수생 등의 합법적인 신분으로 근무하기도 하지만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산업현장에서 투입되기도 하였고, 이들 중 상당수는 인권유린, 노동착취,

날 한국은 다인종·다민족 국가로 이행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은 서구의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단일한 역사, 언어 그리고 문화적 특성을 유지해 왔다. 뿐만 아니라 이주민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는 많은 비서구 사회들과 달리 한국에서는 소수민족 공동체가 두드러지게 발달된 것도 아니며, 분리주의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지역갈등이 심각한 수준도 아니고, 사회통합이 대단히 어려웠던 것도 아니다(엄한진 2007 51).<sup>9)</sup> 특히 경제 성장 달성, 올림픽 개최, 외환 위기 극복 등 국가적 과제를 앞두고 있을 때마다 정부는 국민국가를 매개로 하는 대응방식을 택했고, 그 결과 민족주의는 한국 사회에서 방어적이고 폐쇄적인 형태로 확산되었다(한경구·한건수 95). 이처럼 한국 사회는 단일민족에 기초한 동질적인 문화집단이라는 강한 통념이 있었고, 다른 다문화사회에 비해 다문화 형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 과정이 부족했기에 오늘날 이주민으로 인한 문제들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sup>10)</sup> 정부가 다문화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정책적 지원이 한국어, 한국전통문화에 치중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동화주의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편법활용, 송출비리 등의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 기준으로 전체 결혼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11.1%이다. 이러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자의 증가는 전세계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대량 실업, 빈곤의 확산 그리고 이로 인한 이민 수요의 급격한 증가와도 관련이 크다(엄한진 2007 36-37). 한국 사회의 경우 최근의 이주현상이 근대국가 형성 이후 사실상 최초로 나타난 본격적인 국내로의 이주이고, 다인종·다민족 사회로의 이행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학계, 정부, 시민사회에서는 한국 사회가 급속한 이주민의 증가에 어떻게 대처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9) 이들 국가들은 주로 1950, 60년대에 독립하였고, 1970, 80년대 경제 발전을 이루는데 실패하면서 민족국가가 아직 형성 중에 있거나 민족국가를 형성하는데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엄한진 2007 51).

10) 한경구·한건수(68)는 캐나다나 호주의 경우 다문화주의 채택은 오랜 이민의 역사로 인해 축적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모색하면서 단순한 기본권 보장이거나 이주민 지원 대책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문화의 차이를 존중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즉 다문화주의는, 이주민의 통합과정에서 주류 사회와의 갈등으로 나타나는 생활양식, 세계관, 가치관의 문제가 결국 문화의 영역에서 나타나고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임을 사회적으로 합의하였기에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있다.<sup>11)</sup>

한국 사회의 인적구성이 변하고 다양한 언어가 한국사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언어와 소통의 문제는 이주민의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로 부각되었다(외국인정책위원회 124). 그러나 다인종·다민족 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논의에서 언어의 문제는 주로 ‘한국어 교육’이라는 관점에서만 논의되면서 동화주의적인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다(엄한진 2008 112). 이주민의 언어문제가 ‘한

11) 정책 담론의 차원에서는 한국 정부가 다문화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듯이 보이며 이주민과 관련된 정책 담론 형성의 과정에서 다문화사회가 중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임을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확인할 수 있다(김희정 65-66).

- 2006년 2월 13일 행정자치부는 “한국이 급속하게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는 이해 하에” 부서 행정 목표를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 2006년 4월 2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혼혈인 및 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과 ‘결혼 이민자 사회통합안’의 두 정책이 채택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국이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는 것은 이미 거스를 수 없다”라고 선언했다.
- 2006년 5월 포괄적인 다문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단일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교과서를 수정하기로 했음을 밝히고, 다문화를 강조하고 타인종에 대한 관용을 강조하는 내용을 교과서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 2006년 4월 26일 대통령 산하의 차별시정위원회가 발표한 ‘혼혈인과 이주자에 대한 사회통합 지원안’에서 “한국이 다문화 열린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촉구하며 혼혈인과 이주민이 차별받지 않고 한국에서 환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라고 지원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2007년 7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4개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7인으로 구성된 외국인정책위원회 출범하였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민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은 이주민의 통합과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사회 형성보다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구대책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한 측면이 있다(김희정 66). 물론 국제결혼의 급증과 함께 결혼이주자들이 등장하면서 이주민에 대한 정책과 인식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민을 수용하지 않는 입장을 수정하기에 이른다(한경구·한건수 72).<sup>1)</sup> 그러나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모든 이주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주자와 그 자녀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이주민과 관련된 다문화정책은 정부의 선택과 배제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게 반영되고 있다.

국어 습득'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더욱 본질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만이 아니라 언어 사용자의 정체성(identity)을 드러내는 중요한 방식(cf. Heller 308)인 동시에 소통상황에 '참여'를 보장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주사회의 언어를 모르는 이주민에게 법정, 병원 등 공공기관에서 모국어를 사용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주민의 주체적인 언어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 이외에도 공공기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상황에 이주민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sup>12)</sup>

상이한 언어가 접촉하는 상황에서 이주민이 주류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주민의 한국어 습득과 함께 통·번역서비스가 있어야 하는 데도, 이주민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통역은 본격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국가가 정부부처, 법원, 의료시설, 학교,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이주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문화 정책의 틀 속에서 통역의 문제를 논의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 3.2 이주민을 위한 정책에서의 지역사회통역

다문화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통·번역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특히 관련 정책은 최근 발표되기 시작했다. 국내 법원에서는 이주민의 소통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훈령이나 예규를 통해 재판과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의 통·번역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대법원 재판예규 제1040호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2004년), 법무부 훈령 제556호 '인권보호수사준칙' 제56조(2006년), 경찰청 훈령 제461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4조(2005년)는 수사

12) 여기서 사용한 '참여'라는 표현은 법정통역에 대한 논의에서 등장하는 '언어적 참여권(linguistic presence)'이라는 개념과 연관이 있다. '언어적 참여권'이라는 개념은, 미국 '아리조나 주 대 나티비다드(Arizona State v. Natividad)' 사건 판례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참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de Jongh 20).

나 재판과정에서 통·번역 제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법원 재판예규 제1040호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에서는 공소장의 번역, 통역·번역인의 지정, 통역·번역인의 선발 및 관리, 관할 지역에 통역·번역인이 소재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통역·번역 수당 등 지급, 통역·번역료 산정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통역의 문제가 포괄적인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되기 시작했음을 알린 문서는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이다.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 및 제6조가 법적 근거가 되어 수립된 이 정책은,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구현”(김남일 147)을 포괄적인 목표로 한다.<sup>13)</sup> 외국인정책 수립의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2008년 12월에 발표한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2009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에 의하면, 외국인정책은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일시적·영구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제반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외국인정책위원회 15)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정책 또는 이민정책은, 국경통제(협회의 “출입국관리” 정책), 체류 관리(유럽의 경우에는 체류허가·취업허가, 한국·미국·일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취업허가), 사회통합의 내용을 다루는데, 한국의 외국인정책은 주로 출입국·체류관리 위주였다(cf. 한건수·설동훈 21).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외국인정책이 고려된 것은 비교적 최근부터이며, 이주민의 증가로 인한 미래의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최대한 예방하고, 정주 외국인 및 그 2세의 조기 정착을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책이 마련되었다. 한건수·설동훈(21)은 한국사회의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의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에 대

13) 김남일은 한국 사회에서의 이주현상이 외국인력 수요 증가, 체류 외국인 유형의 다양화 및 정주화로 인해 크게 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외국인들이 일시적인 체류 형태로 국내 거주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국제결혼, 외국인근로자 유입,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체류가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특정 외국인의 거주지역(서초동 서래마을,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안산지역 등)이 형성되는 등 외국인의 정주화 현상도 뚜렷이 나타난다고 말한다. 따라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마련의 배경과 관련하여 사회통합정책의 체계적 수립·시행의 필요성, 다문화 포용에 필요한 사회 환경 조성, 국가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 외국인력 도입·활용, 인권보호 및 국제협력 강화, 외국인정책에 대한 총괄시스템 필요 등을 지적하고 있다(151-155).

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와 인권 옹호,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한국어와 기초 소양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 등에 맞추어져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정체성을 함양하는데 있다고 주장한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통역서비스는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등 각 관련부서가 주체가 되어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는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외국인정책위원회 5),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6-7), “질 높은 사회통합”(35) 등이며, 통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3자 통역서비스 확대”(외국인정책위원회 5), “전국적인 통·번역 핫라인시스템 구축(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7), “통·번역전담 인력 채용·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35), “통역요원 필요시 자원봉사단원 활용 통역 지원(16개국 139명 통역요원 풀 구성·운영)”(112), “건강진단 시 외국어 3자 통역지원(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활용토록 안내”(116), “의료진과 환자간의 통역 지원이 가능한 전문 코디네이터 필요”(114),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229) 등이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언급되는 통역 유형은 ‘전화통역’이다. 현장에서 수행하는 ‘순차통역’에 대한 내용도 있으나 국가가 이주민을 위한 통역과 관련하여 가장 원형적으로 간주하는 통역 유형은 ‘전화통역’이다. 전화통역의 대표적인 사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산하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제공하는 ‘3자통역서비스’나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통·번역 핫라인’이다.<sup>14)</sup>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통역서비스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결혼이민자를 위해 제공하는 통역이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통역이 제공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입국초기 상담, 정보제공, 교육과정 등 통역”, “가족간 의사소통 지원

14) 윤인진(283-285)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정부가 “다양한 국익을 고려하여 외국인 이주를 관리하되 체류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비용을 최소화하고, 외국인과 국민 간 상호문화를 이해·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열린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다고 말하면서, 특히 “국익”과 “관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되는 개념이라고 지적한다. 즉 정부는 저출산률과 고령화로 야기되는 인력부족 문제를 외국인력 도입과 국제결혼으로 해결하는 한편, 전문인력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단순 기능 인력은 정주화를 막는다는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남일(156)은 과거 외국인 정책이 통제와 관리 중심이었다면,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개방’과 ‘인권’ 중심이라고 말한다.

및 위기 대응을 위한 통역 파견”, “유치원·초등학교 알림장 번역, 학교 상담 시 통역사 파견”, “행정·사법기관, 병원 진료 등에 필요한 통역 파견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외국인정책위원회 229-230).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통번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통·번역 과정’을 전제로 하는 정책들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다국어 기반의 행정 서비스”(외국인정책위원회 124)에 대한 논의에서 “통역”이나 “번역”이라는 표현은 명시적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통·번역의 과정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통·번역이 다문화시대 행정과 공공서비스에서 필수적인 과정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다문화와 사회통합에 대한 정책 담론 속에서 지역사회통역이 새롭게 조명을 받으면서 정책으로 다뤄지기 시작했으나, 정책에서 드러나고 있는 통역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인식은 아직 많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경우 통·번역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전체 문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고 주로 원칙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한국어교육에 비해 구체성이 많이 떨어진다.<sup>15)</sup>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는 통번역 예산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 통역사의 확보, 교육 및 인증 등 국가가 직접 개입하고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특히 번역학계에서 지적하듯이 지역사회통역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문제가 지역사회통역사 교육과 인증에 대한 제도 확립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cf. 김진아 2008, 김진아 외 2009, 최철 2009, 정혜연 2009), 정책에서 이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정책에서 주로 언급하고 있는 지역사회통역 유형이 ‘전화통역’이라는 점도 문제가 있다. 전화통역 방식은 면대면 상황에서만 포착이 가능한 비언어적 정보(표정, 몸짓 등)의 손실, 통역내용의 부정확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통역방식임을 학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cf. Wadensjö 1999, Bot 2005, Lee 2007). 오늘날 전화통역은 많은 국

15)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명시된 이주민을 위한 언어정책은 ‘언어교육’과 ‘통번역서비스’로 구분되는데, 언어교육과 관련해서는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정책도 원칙적인 차원에서 간단히 언급될 뿐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가에서 이용되는 서비스이긴 하나, 이 같은 통역 품질 문제로 전화통역만 제공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다른 유형의 통역서비스도 제공하는 국가가 많다.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번역학계에서는 정책적 담론에서 나타나는 지역사회통역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환영하면서도, 통역에 대한 국가의 이해와 인식의 부족 그리고 실제로 제공되는 통역서비스의 수준에 대해 우려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4. 한국 사회에서의 지역사회통역과 국가의 역할

##### 4.1 국가에 의한 지역사회통역서비스의 제공 방식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이주민을 위한 정책에서 지역사회통역이 언급되는 양상을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본 절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넓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각종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지역사회통역을 중심으로 국가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는 지역사회통역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통역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주체이기도 한다. 국가가 제공하는 통역서비스는 통역사들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국가가 고용하는 통역사는 주로 ‘(계약)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식, ‘통역사 명단 작성 후 필요 시 개별적으로 통역을 의뢰하는 방식’, ‘자원봉사자 활용 방식’ 등으로 구분된다.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계약)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식과 ‘통역사 명단 작성 후 필요 시 개별적으로 통역을 의뢰하는 방식’을 혼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법정통역의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통역사가 주로 고용되고 있다. 2000년 2월부터 서울고등법원, 서울·인천·수원·부산·광주지방법원 등 6개 법원에서는 외국인형사사건 전담 재판부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같은 해 7월부터는 영어통역사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지방법원의 영어통역을 전담토록 하고 있다(대법원). 또한 외국인형사사건 전담재판부를 두고 있고 법원에서는 통역사 명단을 작성한 한 뒤 필요시 통역사에게 연락하여 통역을 의뢰하고 있고, 유능한 통역사 확보를 위해 2000년 5월부터 ‘통역인의 지정 및 통역료의 산정에 관

한 예규'를 개정하여 법정 통역료를 인상한 바 있다(법원행정처).<sup>16)</sup>

‘자원봉사자 활용 방식’도 정부 부처, 법원, 병원, 수사기관 등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일례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통역인 자원봉사자 제도’를 추진하여 “한국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는 외국인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속 증가하는 외국인 관련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07년 11월 통역인 봉사자 33명(총 13개 외국어)을 위촉”(수원지방법원)한 바 있다. 자원봉사자는 대면통역서비스와 3자간 전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자원봉사단체인 ‘한국 BBB운동본부’의 봉사자들을 통해 3자간 전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울가정법원에서도 2009년 4월 통역자원봉사자(총 14개 외국어)를 모집하면서, 주된 활동은 “법원을 방문하는 외국인과 법원직원과의 상담에 대한 통역”과 “외국인의 서류작성에 도움”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통역활동의 유형은 “출근봉사”와 “통화봉사”로 분류된다(서울가정법원).

통역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제도는 의료통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는 2009년 5월 ‘전문의료통역사양성과정 교육생’을 50여명 모집하였다(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모집대상은 “2개 언어에 능통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통번역대학원 졸업자”, “의료통역업무를 수행 중인 자 또는 2개 국어에 능통한 자 등”으로 한정하였고, 총 200여 시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의료통역의 기본이해(30시간), 의료통역 프로세스 및 커뮤니케이션(60시간), 의료법 및 국제의료보험실무이해(30시간), 의학용어(30시간), 국내·외 현장실습 및 사례연구(50시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통역봉사자는 100시간의 의무 무료봉사를 해야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의료관광통역이나 의료관광코디네이터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경험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통역자원봉사자를 선발하고 교육한 기관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통역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통역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이나 통역사 모두

16) 김진아(27)는 법정통역사 확보를 위해 해당 관청에서 국내 통·번역사 교육기관에 통역사 명단을 요청·확보한 후 법정 통역 필요시 명단을 토대로 통역사에게 통역을 의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한 모델이다.

통역을 수행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화통역’ (또는 ‘3자통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화통역은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정부기관에서 통역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과 ‘외부의 기관(예, 사회단체, 통역자원봉사단체)을 이용하여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정부기관에서 통역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운영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가 있다. “국내체류외국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18개 국어로 행정·생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맡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기능 확대로 체류외국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외국인정책위원회 124-125)을 하게 되면서 2008년 기준 9개 이상의 협력기관(예,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인천소방방재본부, 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 국립현충원, 국세청, 대전교도소,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 청주여자교도소, 대전시청 등)에 총 64건 이상의 통역서비스를 제공했고, 출입국관리소 자체의 필요에 의해 총 189건의 통역(출입국 관련 통역)을 수행했다. ‘외부의 기관(예, 사회단체, 통역자원봉사단체)을 이용하여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의정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김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과 시민단체를 통해 전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국가가 통역사를 고용하는 방식과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국가 중심의 지역사회통역체도가 전화통역 유형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에 대해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자원봉사자에 의한 통역은 통역품질의 저하, 통역에 대한 통역사의 책임감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법정통역 관련 연구에서는 모두 통역사의 수급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관리의 미진함을 지적하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김진아 2008, 김진아 외 2009, 최철 2009, 정혜연 2009). 통역사의 수급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특히 통역이 필요한 언어의 문제와 통역사의 자격요건 문제를 고려해 볼 때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더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 4.2 지역사회통역의 언어와 통역사의 자격요건

지역사회통역사의 수급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들(예, 통역료 산정, 통역사의 교육 및 인증, 통역서비스와 교육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지역사회통역이 필요한 언어의 성격과 관련이 크다. 행정안전부의 ‘2009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내 거주 이주민의 국적별 분포는 중국 국적자(조선족 포함)가 56.5%로 가장 많고, 동남아 국적자는 21.2%로 그 다음으로 많다. 이러한 분포는 결국 통역 수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법정통역의 경우 가장 수요가 많은 언어는 중국어이고, 그 다음은 영어, 몽골어, 베트남어, 일본어, 러시아어 순이다(정혜연 185).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18개 외국어에 대한 통역사 명단을 확보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외국인 형사피고인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어의 경우 통역사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러시아, 태국, 아랍어, 파키스탄, 몽골 등 형사피고인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경우에도 해당 언어의 통역사가 부족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법원행정처 2). 이러한 측면 때문에 통역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모집 언어가 특정 언어에 편중되어 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2009년 통역자원봉사자를 모집할 때도 모집 대상 언어는 중국어, 영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불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독일어, 태국어, 포르투갈어, 말레이시아어, 캄보디아어였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2009년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르헨티나어, 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아어, 베트남어, 방글라데시 통역사를 모집했다. 의료통역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전문의료통역사를 모집할 때 대상이 된 언어는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5개 언어였다.

모집 언어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지역사회통역에서 중요한 언어는 국내에 사용자가 많지 않은 언어들이며, 따라서 우수한 통역 인력의 확보는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 물론 소수언어 통역사 확보의 어려움은 한국 사회에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다문화사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다(Ozolins 1991 112-113). 호주와 미국에서도 주류 사회의 구성원을 교육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통역 능력을 갖춘 통역사로 육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소수 언어는 이주민 출신 통역사가 통역하는 비율이 높다. 한국 사회에서도 지역사회통역을 수행하

는 통역사 중 이주민 출신 통역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주민을 통역 인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법정 통역사의 경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등록되어 있는 법정통역사가 총 164명이며, 이 중 20%에 해당하는 28명이 이주민인 것(김진아 외 132)으로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이주민 통역사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지역사회통역사를 보다 원활하게 확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사회통역에서 필요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이러한 언어의 통역 교육을 받은 사람은 더욱 소수라는 점은 결국 해당 언어 통역사 확보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사회통역사 모집 공고에서 통역사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그대로 반영된다. 전문적인 통역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는 해당언어 사용자를 구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모집 공고한 의료통역자원봉사자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통역대학원 졸업, 해당 외국어에 능숙한 의사, 간호사 등)를 제외하고는, 주로 “해당언어 능통자” 또는 “해외동포 및 외국인 중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서울가정법원)를 모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통역의 품질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상이다.

지역사회통역사가 되기 위해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결국 지역사회통역사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sup>17)</sup> 호주, 미국, 캐나다 등 다문화국가가 ‘임시 서비스 제공 국가’ 단계에 있을 때는 이중언어사용자라면 누구나 통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cf. Gentile, Ozolins, Vasilakakos 12-14). 오늘날에도 통역에 필요한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

17) 법정통역사의 경우 재판예규 제 1040호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에서 통역사의 선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많다. 제6조에서는 법원이 매년 1월말까지 각 관할 지역의 사정에 따라 통역·번역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으리라 예상되는 1개 또는 수 개의 외국어에 관해 2인 이상의 통역·번역인을 미리 선정하여 대상자명단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제7조에서는 각급 법원은 통역·번역인을 선정할 때 대상자의 통역 경력,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진아 외(134)에서 지적하듯이 여기서 말하는 통역경력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성실성의 정도는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하면서 주류사회의 언어도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지역사회통역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통역이 필요한 이주민의 지인이나 친척이 통역을 수행하거나, 이주민 지원 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이 통역사 역할을 맡기도 한다(Wadensjö 2008, Gehrke 1989, Greaves 1988). 이러한 측면 때문에 곤잘레스, 바스케즈, 미켈슨(González, Vázquez and Mikkelsen)은 지역사회통역이 “비전문적인 통역사들에 의해 제공되는 통역”(129)이라고 말한다.

지역사회통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주류언어와 이주민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이중언어사용자들이다. 그러나 이중언어사용자는 누구나 지역사회통역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번역학계에서는 한동안 의견이 분분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통역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던 사람들도 훌륭하게 통역을 수행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cf. Bowen *et al.* 1995), 유창한 이중언어사용 능력은 통역 수행의 필요충분조건이 된다는 주장이 잘못된 것만도 아닌 것 같다. 특히 이러한 관점은 번역학자인 브라이언 해리스(Brian Harris)가 “자연번역(natural translation)”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바로서, 그는 “번역은 이중언어사용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translating is coextensive with bilingualism)”(Harris and Sherwood 155)이라고 주장했다. 즉 모든 이중언어사용자에게는 어느 정도의 번역 수행 능력이 생득적으로 있기에 번역 수행은 자연적인 것이고, 번역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은 “자연번역자”들이 일상적인 번역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해리스의 주장에 대해 투리(Toury)는 “번역 소질(predisposition for translating)”과 “번역 기술(translating as a skill)”은 별개라는 주장으로 반박한다(245). “번역 소질”은 이중언어사용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심지어 인간의 기본적인 언어능력의 중요한 부분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번역 기술”은 이중언어사용 능력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투리는 번역 기술이 “생득적”이고 “자연적”이라는 주장은 “소질”이 “기술”로 실제 “발현(emergence)”되는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즉 생득적인 번역 능력이 “기술”로 “외현화(externalize)”되는 과정, 특히 고도의 번역 기술의 형성을 촉발시키는 요인과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해리스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최근에는 전문적인 지역사회통역 교육을 받은 사람이 통역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번역학

계에서 지배적인 의견이 되고 있다(Schäffner 100).

이러한 논의는 한국 사회에서의 지역사회통역사 수급 및 교육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준다. 투리의 주장처럼 출발어와 도착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이중언어사용자에게는 “통역 소질”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이중언어사용자의 통역능력은 자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통역 수행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것은 “통역 기술”이며, 이는 투리가 설명하듯이 “통역 소질”이 교육과 연습을 통해 하나의 “기술”로 “발현”되고 “외현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쾨체커도 지역사회통역에 대한 논의에서 전문적인 통역과 비전문적인 통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매우 애매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통역사의 교육과 인증을 통해 일정 수준의 통역 품질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cf. Pöchhacker 127-128).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도 지역사회통역사를 전문적으로 교육 및 양성하고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다.

### 4.3 지역사회통역사의 인증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지역사회통역사의 선발과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시험 및 인증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오늘날 통역사 인증시험을 제도화하여 체계적으로 통역사를 선발하고 지역사회통역사의 자격을 검증하고 있다. 일례로 영국에서는 커뮤니티 통역사 관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무, 의료, 행정서비스 통역사에 대한 인증시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통역사 등록 시스템’을 국가가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Shackman 18). 법정통역의 경우, 영국에서는 통번역자연연구소(The Institute of Translators and Interpreters)를 통해 법정통역사 능력인증시험을 권장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국립통번역사인증기관(NAATI)이 연방정부와 주정부,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통·번역사를 양성하고, 통·번역사 자격시험을 주관하며,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국립통번역사인증기관에서는 1977년부터 20여개 언어에 대한 지역사회통역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승인·감독도 맡고 있다. 호주 지역사회통역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국립통번역사인증기관은 인증 레벨이 2급에서 5급까지 있으며, 법정통역은 3급 자격(즉,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통역이 가

능한 사람, 순차통역이 가능한 수준)에 해당하는 3급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다. 현재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에서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Ozolins 1999 113).

이처럼 다문화사회에서는 주로 지역사회통역사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여 통역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법정통역사 또는 의료통역사 인증시험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인증제도 마련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5. 결론

본고에서는 지역사회통역의 발달과정이 국가의 다문화사회 담론 형성 및 이주민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살펴보는 한편, 한국 사회에서 지역사회통역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의 언어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 함께 지역사회통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다문화담론의 확산과 함께 나타났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법정통역, 의료통역을 비롯한 각종 지역사회통역이 국가 정책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시행됨으로써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주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처럼 이주민을 위한 통역 관련 담론의 형성, 통역의 제도화, 통역규범 확립에 있어 진전이 있었으나 아직 미진한 부분도 많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가가 지역사회통역 수요에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들을 유형별로 분류한 오졸린스의 분류법을 토대로 본다면, 한국은 현재 ‘임시 서비스 제공 국가’에서 ‘일반 언어서비스 제공 국가’나 ‘법리적 접근국가’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통역 수요를 개별적, 임시적으로 해결하던 단계에서 통역사 명부 관리를 통해 명부에 등재된, 자격을 갖춘 통역사에게 통역을 의뢰하는 기관들이 등장하고 통역사 교육에 관심을 보이는 단계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별, 기관별로 변화의 정도가 다르고, 통역서비스의 수준이나 제도화의 정도도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정책적, 법적 근거 확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

징이다. 그러나 아직도 통역사 인증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통역 인력 수급에 있어서도 체계적, 전문적인 지역사회통역 교육을 제공하는 것보다 이중 언어사용자 또는 자원봉사자들을 선발하여 곧바로 활용하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이 ‘일반 언어서비스 제공 국가’를 넘어 ‘포괄적 서비스 제공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통역사 교육제도와 통역사 인증제도가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언어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책임 의식이 향상되어야 하는 한편,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이주민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통역에 대한 인증, 교육, 언어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이주민을 위한 양질의 통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

다문화정책에서 언어와 통역의 문제가 ‘필요’나 ‘권리’가 아닌 ‘자원’으로 이해되는 호주와 달리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여전히 ‘필요’와 ‘권리’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언어와 통역 지원을 비롯한 각종 지원이 이주민에게는 ‘생존’의 문제임을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오경석 5). 이처럼 이주에 대한 한국 사회의 경험과 논의의 부족은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다.

지역사회통역의 제도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이주민을 위한 통·번역 인력 확보에 있어 국가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통·번역 인력 양성, 교육 및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통·번역 전문 인력 확보는 한국 사회가 다인종·다민족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둘째, 이주민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는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따라서 지역사회통역제도도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안정적,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중앙부처 시행 계획’은 이주민의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가 “한국어 습득 전 단계”까지만 제공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통역을 필요로 하는 이주민은 항상 ‘학습자’이며, 궁극적으로 이주민은 통역을 ‘졸업’해야 하기에 통역제도도 일시적으로 거쳐 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셋째, 지역사회통역을 수행하는 주체들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상황을 만들어가는 여러 주체 중 하나이며, 이제 국가의 경계 안에서 여러 언어가 상존

하는 가운데 지역사회통역은 동화가 아닌 적응과 통합을 지원하고 다문화적 감수성과 문화다양성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아직은 이주민을 위한 각종 통역이 한국 사회에서 다소 이질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이주’라는 단일한 관점에서 지역사회통역은 보편 가치로서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사회 지향’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지역사회통역의 발달과정을 고찰했지만, 지역사회통역제도의 발달에 대한 향후 연구에서 검토가 필요한 주제는 ‘사회단체’의 역할이다. 이주민의 국내 이주 초기에는 정부의 이주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나 업체로부터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을 때 사회단체들이 이주민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한경구·한건수 71). 정부가 이주민 정책을 입안·추진·기획하는 과정에서도 긴밀하게 협조한 바 있는 이들 사회단체들은, 이주민을 위한 지역사회통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도 지역사회통역의 중요한 주체로서 이주민들을 위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단체들이 지역사회통역의 발달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검토를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강지혜. 2004. 『통역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고영민. 2004. 「대화통역사의 역할에 대한 연구」. 『번역학연구』 5(1): 5-24.
- 고영민. 2005. 「대화통역사의 중재자적 기능」.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7(1): 3-18.
- 김남일. 2007. 「열린 사회 구현을 위한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한국사회학회 동북아시아위원회 용역과제 07-7』, 147-179.
- 김진아. 2008. 「법정통역의 실태와 향후 과제」. 『통번역학연구』 11(2): 21-37.
- 김진아·정혜연·이상빈. 2009. 「전문통역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그에 따른 대책」. 『통번역학연구』 12(2): 125-144.
- 김희정. 2007.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한국적 적응」. 『(사)국경없는 마을 학술토론회 자료집.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현실과

- 쟁점』, 32-40.
- 대법원. 대법원장 취임 1주년 업적 정리. 법원 보도자료. 2009.7.12. <<http://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work?gubun=6&seqnum=193>>.
- 류현주. 2006. 「커뮤니티통역의 전문성 제고 방안」. 『번역학연구』 7(1): 87-103.
- 법원행정처. 외국인 형사피고인의 절차상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 보도자료. 2009.9.12. <[http://www.scourt.go.kr/info/scrt\\_org/scrt\\_branch/crt\\_adstr/index.html](http://www.scourt.go.kr/info/scrt_org/scrt_branch/crt_adstr/index.html)>.
- 서울가정법원. 통역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2009.4.29. <<http://slfamily.scourt.go.kr/main/Main.work>>.
-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통역인 자원봉사자 운영 안내. 2009.5.15. <<http://suwon.scourt.go.kr/dcboard/DcNewsListAction.work>>.
- 엄한진. 2007. 「세계화시대 이민과 한국적 다문화사회의 과제」. 『한국사회학회 동북아시아위원회 용역과제 07-7』, 39-69.
- 엄한진. 2008. 「한국 이민담론의 분절성」. 『아세아연구』 51(2): 112-141.
- 오경석. 2007.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 『(사)국경없는 마을 학술토론회 자료집,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현실과 쟁점』, 2-15.
- 외국인정책위원회. 2007.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2009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서울: 법무부.
- 윤인진. 2007.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한국사회학회 동북아시아위원회 용역과제 07-7』, 251-291.
- 이혜경. 2007. 「이민 정책과 다문화주의」. 『한국사회학회 동북아시아위원회 용역과제 07-7』, 219-250.
- 정혜연. 2009. 「법정통역 교육」. 『번역학연구』 10(2): 181-206.
- 조희철. 2009. 「일본법정통역의 현황과 과제」. 『통번역학연구』 13(1): 183-205.
- 최철. 2009. 「법정통역의 법적 의의와 제도화에 관한 고찰: 미국 판례와 적정절차의 원칙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2(2): 252-270.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전문의료통역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안내.

- 2009.10.1. <[http://wa.khrdi.or.kr/htm/custom\\_center/khrdi\\_intro.jsp](http://wa.khrdi.or.kr/htm/custom_center/khrdi_intro.jsp)>.
- 한건수 · 설동훈. 2007. 『이주자가 본 한국의 정책과 제도』.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한경구 · 한건수. 2007. 「한국적 다문화 사회의 이상과 현실」. 『한국사회학회 동북아시아대위원회 용역과제 07-7』, 71-116.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결과. 2009.9.21. <<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ctxCd=1012&userBtBean.ctxType=21010002&userBtBean.bbsSeq=1016076>>.
- Australia. Senate Standing Committee on Education and the Arts. 1984. *A National Language Policy*. Canberra: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 Baker, Mona and Gabriela Saldanha (eds) 2008.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2nd Edition, London: Routledge.
- Berk-Seligson, Susan. 1990. *The Bilingual Courtroom: Court Interpreters in the Judicial Process*.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lewett, Jill. 1987. "Interpreting and Translating in Australia. A Celebration of Ten Years." Paper Presented at the 8th World Congress of Applied Linguistics, Sydney.
- Bowen, Margareta, David Bowen, Francine Kaufman and Ingrid Kurz. 1995. "Interpreters and the Making of History," in Jean Delisle, Jean and Judith Woodsworth (eds), *Translators Through History*,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Bot, Hanneke. 2005. "Dialogue Interpreting as a Specific Case of Reported Speech." *Interpreting* 7(2): 237-61.
- Chesher, Terry. 1997. "Rhetoric and Reality: Two decades of Community Interpreting and Translating in Australia," in Silvana E. Carr, Roda P. Roberts, Aideen Dufour and Dini Steyn (eds), *The Critical Link: Interpreters in the Community*,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277-292.

- Corsellis, Ann. 2008. *Public Service Interpreting*. Basingstoke an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Cronin, Michael. 2002. "The Empire Talks Back: Orality, Heteronomy and the Cultural Turn in Interpreting Studies," in Franz Pöchhacker and Miriam Shlesinger (eds), *The Interpreting Studies Reader*, London: Routledge, 387-97.
- Cronin, Michael. 2003. *Translation and Globaliz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de Jongh, Elena. 2008. "Court Interpreting: Linguistic Presence v. Linguistic Absence." *Florida Bar Journal* 82(7): 20-34.
- Erasmus, Mabel, Lebohang Mathibela, Erik Hertog and Hugo Antonissen (eds). 1999. *Liaison Interpreting in the Community*. Pretoria: Van Schaik.
- González, Roseann Duenas, Victoria Vásquez, and Holly Mikkelson. 1991. *Fundamentals of Court Interpretation: Theory, Policy and Practice*. Durham, NC: Carolina Academic Press.
- Gentile, Adolfo, Uldis Ozolins and Mary Vasilakakos. 1996. *Liaison Interpreting. A Handbook*. Melbourne: Deakin University Press.
- Gehrke, Monika. 1989. "Preparing Undergraduates for Community Interpreting." *The Jerome Quarterly* 4(3): 7-8.
- Greaves, Anthony. 1988. "Training Volunteer Translators," in D.L. Hammond (ed), *Languages at Crossroads. Proceedings of the 29th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Translators*, Medford, NJ: Learned Information, 373-378.
- Hale, Sandra. 2007. *Community Interpreting*. Basingstoke an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Harris, Brian. 1976. "The Importance of Natural Translation." *Working Papers in Translatology* 2. Ottawa: School of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University of Ottawa.
- Harris, Brian and Bianca Sherwood. 1978. "Translating as an Innate Skill," in David Gerver and H. Wallace Sinaiko (eds), *Language, Interpretation*

- and Communication*, Oxford: Plenum Press, 155-170.
- Heller, Monica. 1988. "Introduction," in M. Heller (ed.), *Codeswitching: Anthropological and Sociolinguistic Perspectives*, Berlin: Mouton de Gruyter, 1-24.
- Hertog, Erik. 2009. "Legal Interpreting: Recommendations for Best Practices." 『통번역학연구』 12(2): 271-297.
- Hertog, Erik and Bart van der Veer (eds). 2006. *Linguistica Antverpiensia 5. Special Issue: Taking Stock: Research and Methodology in Community Interpreting*.
- Lee, Jieun. 2007. "Telephone Interpreting -- Seen from the Interpreters' Perspective." *Interpreting* 9(2): 231-252.
- Lo Bianco, Joe. 1987. *National Policy on Languages*. Canberra: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 Mason, Ian (ed). 1999. *Dialogue Interpreting, Special Issue of the Translator* 5(2).
- Ozolins, Uldis. 1991. *Interpreting, Translating and Language Policy*. Canberra: National Languages Institute of Australia.
- Ozolins, Uldis. 1998. *Interpreting and Translating in Australia: Current Issues and International Comparisons*. Melbourne: Language Australia.
- Pöchhacker, Franz. 1999. "Getting Organized: The Evolution of Community Interpreting." *Interpreting* 4(1): 125-140.
- Schäffner, Christina. 2003. "Translation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Studies in Communication Sciences* 3(2): 79-107.
- Shackman, Jane. 1984. *The Right to be Understood: A Handbook on Working with, Employing and Training Community Interpreters*. Cambridge: National Extension College.
- Toury, Gideon. 1995.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Wadensjö, Cecilia. 1992. *Interpreting as Interaction: On Dialogue Interpreting*

*in Immigration Hearings and Medical Encounters*. Dissertation, Linköping Studies in Arts and Science 83. Linköping,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tudies.

Wadensjö, Cecilia. 1998. *Interpreting as Interaction*. London and New York: Longman.

Wadensjö, Cecilia. 1999. "Telephone Interpreting and the Synchronisation of Talk in Social Interaction." *The Translator* 5(2): 247-64.

Wadensjö, Cecilia. 2008. "Community Interpreting," in Mona Baker and Gabriela Saldanha (eds),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2nd e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43-48.

[Abstract]

## Migration and Community Interpreting in Korea

Kang, Ji-Hae  
(Ajou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interpreting in Korea. By analyzing the government's policy briefs and documents pertaining to immigration and interpreting for immigrants, the present study analyzes the positioning of community interpreting within the larger frame of multicultural and immigration policy and discourse. As the main player in the production and enforcement of norms for community interpreting, the state critically influences not only people's perceptions of community interpreting but also the quality of interpreting services and immigrants' access to these services.

The present paper draws on the work of Ozolins (1998) regarding the different ways in which countries respond to interpreting needs and argues that Korea is in a transitional stage, moving from an “ad hoc services” stage to a “generic language services” and “legalistic approach” stage. An analysis of the “First Basic Plan for Immigration Policy” and other policy documents suggests that community interpreting is represented by the state as a practical and symbolic solution to many of the language problems that have arisen in recent years in relation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immigrants in Korea.

While obvious inter-institutional differences are found, the Korean government in general has made some achievements in giving prominence to community interpreting in recent years by making recommendations and drawing up policies on interpreting. However, a lack of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accreditation, registration, or training systems, all of which have

no clear place within the policy documents, and a heavy dependence on volunteer interpreters and on a telephone interpreting system raise serious concerns regarding the current policies and the state of community interpreting in Korea today.

▶ Key Words: community interpreting, migration, immigration policy, multilingualism, minority language

강 지 혜

아주대학교 인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부교수

[jihaekang@ajou.ac.kr](mailto:jihaekang@ajou.ac.kr)

관심분야: 제도적 번역, 지역사회통역

논문투고일: 2009년 10월 18일

심사완료일: 2009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2009년 12월 15일